

중구는 대구의 미래
to be Jung-gu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예산】



【 기 획 예 산 실 】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3
2-3. 중기지방재정계획	4
2-4.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6
3-1. 재정자립도	6
3-2. 재정자주도	7
3-3.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용계획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10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3. 성과계획서	13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16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6
4-8.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16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6

2017년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공시 제1호(2017. 2. 28.)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인)



- ◆ 우리 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08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739억원)보다 65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3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35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05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0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1.91%입니다.
-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 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지역경기 침체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투자재원의 확보의 어려움 속에 저출산, 인구 구 고령화 등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보조금 및 지방비 등의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수요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실 이휘수(661-2127)

※ 표의 금액은 금액단위 환산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082	1,926	156	2,739	2,596	143
	세출예산	2,082	1,926	156	2,739	2,596	14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00	31.08	0.92	21.4	20.4	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1.91	49.27	2.64	42.03	39.18	2.85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9	16	3	10	5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 구-(4) :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중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8,210	199,400	0	1,837	6,9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44,335	161,363	177,447	192,616	208,2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37,800	100	154,300	100	169,900	100	184,400	100	199,400	100
지방세	27,299	19.81	27,906	18.09	29,505	17.37	32,643	17.70	35,040	17.57
세외수입	20,554	14.92	12,682	8.22	13,605	8.01	16,191	8.78	18,303	9.18
지방교부세	4,300	3.12	4,500	2.92	4,610	2.71	4,600	2.49	4,600	2.31
조정교부금 등	22,592	16.39	25,812	16.73	26,935	15.85	28,948	15.70	35,099	17.60
보조금	63,055	45.76	74,923	48.56	84,490	49.73	93,543	50.73	95,890	48.09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8,476	5.49	10,755	6.33	8,476	4.60	10,468	5.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중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8,210	199,400	0	1,837	6,97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44,335	161,363	177,447	192,616	208,2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37,800	100.00	154,300	100.00	169,900	100.00	184,400	100.00	199,400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10,035	7.28	11,828	7.67	10,742	6.32	11,715	6.35	11,714	5.87
공공질서 및 안전	328	0.24	486	0.31	581	0.34	628	0.34	668	0.33
교 육	425	0.31	248	0.16	372	0.22	416	0.23	444	0.22
문 화 및 관 광	3,967	2.88	2,920	1.89	4,355	2.56	5,518	2.99	6,782	3.40
환 경 보 호	3,708	2.69	3,751	2.43	4,234	2.49	4,231	2.29	10,501	5.27
사 회 복 지	52,457	38.07	65,785	42.63	74,435	43.81	81,555	44.23	82,385	41.32
보 건	3,542	2.57	3,562	2.31	5,681	3.34	6,575	3.57	7,445	3.73
농 립 해 양 수 산	92	0.07	75	0.05	83	0.05	115	0.06	94	0.05
산 업 · 중 소 기 업	3,246	2.36	1,491	0.97	891	0.52	2,185	1.18	4,442	2.23
수 송 및 교 통	4,573	3.32	4,211	2.73	3,960	2.33	5,292	2.87	7,205	3.6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7,313	5.31	10,470	6.79	13,185	7.76	10,631	5.77	9,246	4.64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1,672	1.21	1,945	1.26	2,199	1.29	4,407	2.39	4,571	2.29
기 타	46,441	33.70	47,528	30.80	49,181	28.95	51,132	27.73	53,901	27.0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42,564	245,205	249,701	254,040	258,234	1,249,744	1.60
자 체 수 입	53,717	53,489	54,628	55,693	56,700	274,227	1.40
이 전 수 입	153,255	154,754	159,582	162,282	164,741	794,614	1.80
지 방 채	0	3,000	0	0	0	3,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592	33,961	35,491	36,065	36,792	177,901	0.80
세 출	242,564	245,205	249,701	254,040	258,234	1,249,744	1.60
경 상 지 출	70,525	72,184	73,564	75,286	77,135	368,694	2.30
사 업 수 요	172,039	173,021	176,137	178,754	181,098	881,049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연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194,778	211,062	16,284	8.36
자치단체	192,616	208,210	15,594	8.1
출자·출연기관	2,162	2,853	691	31.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연기관(1개) :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중구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00 (26.75)	199,400 (199,400)	63,811 (53,343)	135,589	0	1,000 (10,468)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중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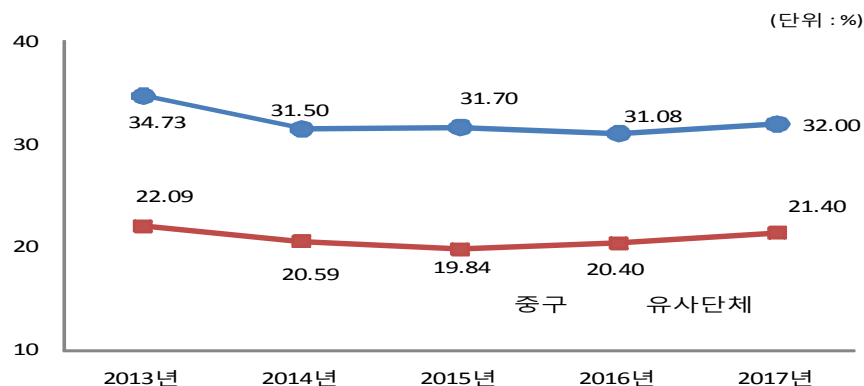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90 (22.92)	233,700 (233,700)	83,897 (53,562)	149,803	0	3,541 (30,334)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4.73	31.80	31.70 (25.37)	31.08 (26.48)	32.00 (26.75)
최종예산	34.65	35.15	34.63 (22.46)	35.90 (22.9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1.91 (47.16)	199,400 (199,400)	102,510 (93,042)	95,890	0	1,000 (10,468)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중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5.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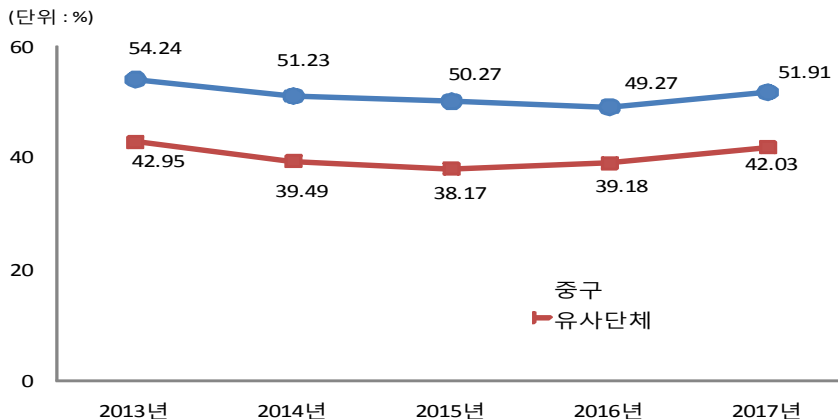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15 (43.69)	233,700 (233,700)	125,351 (98,558)	104,808	0	3,541 (30,334)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4.24	51.44	50.27 (43.94)	49.27 (44.68)	51.91 (47.16)
최종예산	54.18	54.59	55.06 (42.89)	55.15 (43.6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89,550	198,428	5	110	105	10,909	198,533	-8,983	1,926
일반회계	188,932	197,752	0	0	0	9,468	197,752	-8,820	648
기타 특별회계	379	392	5	60	55	1,440	447	-68	1,37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40	284	0	50	50	0	334	-95	-9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7,912	-8,343	-8,120	-7,307	-8,983
통합재정수지 2	1,008	422	619	1,553	1,926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지출 및 순용자를 제외[통합재정수지1]하면 89억원 적자이나,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통합재정수지2]하면 19억원 흑자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중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03,997	229,577	6	110	104	28,178	229,681	-25,684	2,494
일반회계	203,366	228,954	0	0	0	26,793	228,954	-25,588	1,205
기타 특별회계	363	341	6	60	54	1,384	395	-31	1,35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68	282	0	50	50	0	332	-64	-64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4,865	-11,860	-15,042	-17,429	-25,684
통합재정수지 2	-664	1,008	925	4,119	2,494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지출 및 순융자를 제외[통합재정수지1]하면 257억원 적자이나,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통합재정수지2]하면 25억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중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15,577
여성정책추진사업	1	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15,57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증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08,210	310	1안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9.7	
전략경영실	방법용 CCTV 설치	20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동덕로30길 104-14 외 4)	비예산	
녹색환경과	RFID방식 음식물처리기 상부(햇빛)가리개 설치	2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비예산	
건설안전과	아스콘 재포장	70	
	아스팔트 포장 정비	5	
	인도블럭교체	82	
	녹색통학로 전구간 LED보안등 설치	4.2	
	아스팔트포장	50	
	골목길 정비	60	
	하수관거 악취 제거제 설치	3.5	
교통과	남산공영주차장 앞 화단조성	10	
	남산100년 향수길 양방향 교차로 입구 반사경 설치	0.6	
대봉2동	자치프로그램 개설	2.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1810>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중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7	112	131	201,237	186,174	15,063
기획예산실	1	1	3	8	6,458	6,337	121
전략경영실	1	3	5	11	37,953	36,880	1,073
도심재생지원단	1	2	2	2	1,713	882	831
행정지원국	1	14	26	33	29,802	20,325	9,477
복지문화국	1	21	38	38	81,588	79,135	2,453
도시관광국	1	13	30	23	23,766	22,946	820
보건소	1	1	2	12	9,883	8,966	917
봉산문화회관	1	1	3	2	1,865	2,760	-895
의회사무과	1	1	3	2	1,340	1,356	-16
동	0	0	0	0	6,869	6,586	28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00	51.91	41.32	15.36	56.76	78.0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300	58,300	0
	부단체장	40,700	40,7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3,000	150,800	-112,2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0	39,6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8,720	38,720	0
	의원국외여비	22,750	22,750	0
지방보조금		1,334,108	870,840	-463,26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39,270	639,27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92	1,194,600	-
**공무원 일·숙직비		60	172,26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go.kr>)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당 평균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일·야당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으로 우리 중구(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으로 우리 중구(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보조금 지원 등 부적정	3백만원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중구가 2017 회계연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증액된 현황은 없습니다.